

# 심사보고서

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

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2
----------	-----

2023. 4. 28.(금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20일

-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실장 조덕진)

가. 제안이유

-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530억원 규모로 2006. 1. 16일자로 설립되었고, 2009. 3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(772억원)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.
- 공사는 현재 9건의 개발사업을 추진중이고 향후 3건의 신규사업을

계획·검토 중에 있으나, 새정부의 채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%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추진의 여력이 한계에 도달함( '26년 325.2% 예상)

- 또한, 신사업 분야로 공사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, 이에 따른 자본금 출자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출자 계획(안)

구 분	2023년	2024년
현금 출자액	300억원	200억원

※ 출자 총액 : 180,175,900천원(기출자 : 130,175,900천원)

## 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출자의 필요성

- 충북개발공사의 출자자본금 규모는 '21년 결산 기준 1,302억원으로 15개 시도 도시개발공사중 15로 가장 적은 규모임  
\* 도 평균 : 4362억원
-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 재정운영의 자율책임성과 채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의 차입한도를 순자산의 200%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
- '23년 기준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자본규모 3,338억원 대비 156.5%인 5,223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부채비율 200%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나,

- 앞으로 추진 예정인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, 진천 혁신 산단, 오창 나노 산단, 음성 감곡역세권사업이 본격 추진 될 경우 부채비율은 ‘26년도에 최대 325.2%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이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넥스트폴리스산단 규모 조정, 오창 나노산단 SPC 전환과 경영효율화 제고 등 자구노력을 통해 ‘26년 기준 부채비율을 326%에서 181%로 부채비율 144%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.
- 다만, 1,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제천 4산단, 오송 3산단, 에어로 3지구 등 다양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500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고 보았음.
  - \* 도비 500억원 반영시 ‘26년 최고 부채비율 182.6%

#### 4. 검토의견

-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도비 300억원을 금회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는지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- 충북개발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공사채와 신규 사업의재원 조달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임.
-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추진중인 사업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, 향후 추진계획인 대규모 국책사업과 산업 단지 등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## 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(안)」 등

#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수정계획안

의안 번호	252-1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4월 17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530억원 규모로 2006. 1. 16일자에 설립되었고, 2009. 3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(772억원)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.
- 공사는 현재 9건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고 향후 3건의 신규 사업을 계획·검토 중에 있으나, 새정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%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추진의 여력이 한계에 도달함('26년 325.2% 예상).
- 또한, 신사업 분야로 공사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, 이에 따른 자본금 출자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출자 계획(안)

구분	2023년	2024년
현금 출자액	300억원	200억원

※ 출자 총액 : 180,175,900천원 (기출자 : 130,175,900천원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수정계획(안)

## I 추진 배경

### ① 출자 필요성

-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 관리 필요
  - 부채중점관리기관\*을 선정, 재무.부채관리계획 수립 후 공시
    - \* 부채규모 1천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% 이상('21년 공사 부채 4,030억원)
  - 출자 규모 최하위로 사업추진에 한계, 부채비율 지속 상승 예상
- 도 정책사업 추진 등 공사의 역할 확대로 건전한 재무기반 마련 필요
  - 오송 제3국가산단 등 대규모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재무적 여력 확보
  - 신사업 분야로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출자 필요

### ② 공사 자본금 현황(2021년말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합 계	출 자 금			이익잉여금 (~'21)	비 고
		계	설립('06. 1)	1차('09. 3)		
합 계	<b>3,006</b>	1,302	530	772	1,704	
현 금	<b>1,908</b>	204	204	-	1,704	
현 물	<b>1,098</b>	1,098	326	772	-	

\* 타 시·도 15개 도시개발공사와 비교 : 자본금 13위, 출자금 15위

\* 부채비율 : '21년 결산 기준 134.1%, '26년 325.2%까지 상승 예상

## II 출자 계획(안)

- 부채비율을 200%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,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

\* [규모 축소]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/ [추진방식 변경(SPC)] 오창 나노 산단

- 신사업 분야 소요재원 규모는 최소 1,000억원 정도로 관리기준 내에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함

\* [투자 계획] 향후 3년간('24~'26년) 1,000억원 규모의 사업 발굴 및 추진(검토사업 3곳 미정)

### < 사업조정 및 출자 효과분석 >

구 분	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기본 현황	부채총계	5,223	7,524	11,736	13,510	12,612
	자본규모	3,338	3,720	3,985	4,154	4,375
	부채비율	<b>156.5%</b>	<b>202.3%</b>	<b>294.5%</b>	<b>325.2%</b>	<b>288.3%</b>
① 넥스트폴리스 산단 규모 조정 시 부채	부채총계	5,223	6,134	8,635	9,986	8,878
	부채비율	<b>156.5%</b>	<b>164.9%</b>	<b>216.7%</b>	<b>240.4%</b>	<b>202.9%</b>
② 오창 나노 산단 SPC 전환 시 부채	부채총계	5,223	5,716	7,172	7,526	6,836
	부채비율	<b>156.5%</b>	<b>153.7%</b>	<b>180.0%</b>	<b>181.2%</b>	<b>156.3%</b>
③ 신사업 추진 시 부채	부채총계	5,223	6,016	7,772	8,526	7,836
	부채비율	<b>156.5%</b>	<b>161.7%</b>	<b>195.0%</b>	<b>205.2%</b>	<b>179.1%</b>
④ 출자 시 자본	자본규모	3,638	4,220	4,485	4,654	4,875
	부채비율	<b>143.6%</b>	<b>142.6%</b>	<b>173.3%</b>	<b>183.2%</b>	<b>160.7%</b>

- ▣ 향후 신사업 분야 확대 및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500억원 출자 필요  
다만,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'23년 300억원, '24년 200억원 출자



# 붙임 1 시도 개발공사(15개) 자본금 및 재무현황 (2021년 결산 기준)

(단위 : 명, 억원)

기관명	설립	정원 (현원)	출자 자본금	2021년 결산 결과				
				자산	자본	부채	부채 비율	당기 순이익
SH공사(서울)	1989	1,386 (1,359)	71,195	271,481	95,140	176,341	185%	1,398
부산도시공사	1991	306 (291)	6,205	29,614	19,248	10,366	54%	94
대구도시공사	1988	169 (168)	2,723	19,533	6,946	12,256	177%	370
인천도시공사	2003	417 (419)	25,110	88,030	28,905	59,125	205%	3,036
광주도시공사	1993	294 (285)	1,952	10,944	4,445	6,499	146%	179
대전도시공사	1993	948 (902)	2,309	10,488	4,543	5,945	131%	263
울산도시공사	2007	60 (61)	1,400	5,675	2,807	2,868	102%	(112)
GH공사(경기)	1997	713 (668)	17,311	106,775	46,408	60,367	130%	3,572
강원개발공사	1997	117 (113)	3,365	13,875	1,214	12,661	1,043%	(1,691)
<b>충북개발공사</b>	<b>2006</b>	<b>86 (85)</b>	<b>1,302</b>	<b>7,036</b>	<b>3,006</b>	<b>4,030</b>	<b>134.1%</b>	<b>123</b>
충남개발공사	2007	99 (96)	3,425	10,016	5,597	4,419	79%	598
전북개발공사	1998	94 (91)	1,374	7,194	3,401	3,793	112%	37
전남개발공사	2004	136 (128)	3,907	10,633	6,936	3,697	53%	391
경북개발공사	1997	130 (127)	2,834	10,858	8,372	2,486	30%	236
경남개발공사	1997	102 (95)	1,379	11,158	4,569	6,590	144%	(28)

※ 15개 시도 평균 출자 자본금 : 9,719억원(시 평균 1조 5,842억원 / 도 평균 4,362억원)

## 붙임 2 충북개발공사 세부 출자현황

(단위 : 건, 천㎡, 백만원)

구 분	출자 총액			최초 출자 (‘06년 설립자본)			추가 출자 (‘09년)			비고	
	필지	면적	금액	필지	면적	금액	필지	면적	금액		
계	235	497	130,176	136	163	52,966	99	334	77,210		
현 금			20,359			20,359			0		
현 물	소 계	235	497	109,817	136	163	32,607	99	334	77,210	
	밀레니엄 타운 부지	146	435	92,054	47	101	14,844	99 9종	334 건물등	76,947 263	일부 매각
	가경지구 (미분양용지)	2	4	4,535	2	4	4,535	-	-	-	매각 완료
	부용산단 (미분양용지)	2	10	928	2	10	928	-	-	-	매각 완료
	증평지구 (미분양용지)	5	4	1,038	5	4	1,038	-	-	-	매각 완료
	가경지구 (연부용지)	5	19	8,896	5	19	8,896	-	-	-	매각 완료
	증평지구 (연부용지)	75	25	2,366	75	25	2,366	-	-	-	매각 완료

### 붙임 3 주요 추진사업 현황(자체사업 기준)

구 분	사업 면적 (천㎡)	사업비 (억원)	미상환 공사채 (억원)	공사채 발행예정(억원)					비고		
				소계	'23	'24	'25	'26		'27	
진 행 사 업	청주 밀레니엄타운	637	2,952	300	-	-	-	-	-	2016~2028	
	제천 3산단	1,092	1,241	250	-	-	-	-	-	2015~2023	
	동충주 산단	1,405	2,151	300	-	-	-	-	-	2014~2023	
	음성 인곡산단	1,730	3,450	864	900	900	-	-	-	2017~2024	
	청주 북이산단	1,012	2,605	500	1,150	600	550	-	-	2018~2026	
	청주 넥스트 폴리스 산단	1,724	10,418	-	5,900	-	1,200	3,000	1,400	300	2019~2028
	진천 혁신산단	1,344	3,242	-	2,250	-	900	1,000	350	-	2020~2027
	청주 오창 나노산단	1,504	2,950	-	2,370	-	400	1,000	970	-	2020~2028
	음성 감곡 역세권	239	926	-	380	-	100	200	80	-	2020~2027
<b>소계</b>	<b>10,687</b>	<b>29,935</b>	<b>2,214</b>	<b>12,950</b>	<b>1,500</b>	<b>3,150</b>	<b>5,200</b>	<b>2,800</b>	<b>-</b>		
검 토 사 업	제천 4산단	818	1,224	-	미정						-
	오송 3산단	6,750	33,910	-	미정						-
	에어로 3지구	1,290	2,329	-	미정						-
	<b>소계</b>	<b>8,858</b>	<b>37,463</b>	<b>-</b>	<b>-</b>						
<b>합계</b>	<b>19,545</b>	<b>67,398</b>	<b>2,214</b>	<b>12,950</b>	<b>1,500</b>	<b>3,150</b>	<b>5,200</b>	<b>2,800</b>	<b>-</b>		

## 붙임 4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공기업법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,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
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### 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